

공정위, '97 하반기 중세규제개혁 추진방안 제시

경제규제개혁위원회(위원장: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)는 지난 8월 25일(월)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서 '97년도 상반기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하고, 규제개혁 방안의 이행현황과 '97년도 하반기 경제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하였는데, 동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I. 상반기 규제개혁실적 평가

肯定的 側面

- 진입규제, 창업, 물류, 품질인증, 자금조달 등 8개 분야 28개 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수립
 - 확정함으로써 기업활동 애로요인을 단기간 내 상당부분 해소
-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합리적 개편으로 피규제자 입장에서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가 전향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에 동참하는 계기 마련
 - 민간중심으로 규제개혁추진기구를 구성하고 토론을 활성화
 -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따라 해당부처가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

未洽한 側面

- 기업의 고충처리적 성격의 단위과제 위주의 개혁으로 인해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 개혁에는 미흡

-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 거양을 목적으로 한 과제와 특정분야나 특정계층에 혜택이 되는 과제가 다수

-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이익집단의 저항과 반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노력 미흡

II. 규제개혁방안의 이행현황

- 28개 과제중 「시공업체소속 건축사의 설계업무 허용」은 규제개혁추진회의 소위원회에서 논의중
 - * 「단순의약품의 약국의 판매허용」등 의약품 유통관련 3개 과제는 의료개혁위원회 검토결과가 나온 뒤에 규제개혁추진회의 상정 예정
- 기확정된 27개 과제중 대부분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「수도권 자연보전지역내 침단산업신·증설규제완화」는 국회 계류중
 - * 「건축심의제도의 간소화」과제중 미술장식품 설치의무 완화방안은 규제개혁추진회의 소위원회에서 방안마련 후 추진회의 상정 예정

규 제 개 혁 방 안	이 행 현 황
<p>〈정상추진〉 (26개 과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거지역에 비해 소규모공장 설치 허용범위의 확대 • 개별공장 입지규제한 완화 • 건축관련 심의제도의 간소화 • 공장구내 가설건축물 설치 완화 •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개선 • 입찰보증금제도의 개선 • 전력산업의 진입규제 완화 • LNG 수출입승인제도 폐지 • 전기공사업 면허제도 개선 • 축산업의 허가·등록제 개선 • 양곡도정업 등록제도 개선 • 항공산업 노선진입제한 완화 •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업체 입주제한 완화 • 녹지지역내 창고시설 건축제한 완화 • 농수산물물류센터의 설치규제 완화 • 물류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•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• 자동차안전검사제도 개선 •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제도 개선 •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개선 • 회사채발행제도의 개선 • 유상증자 물량제한 규제완화 • 사업자단체의 설립·가입 및 회비납부의 자율화 • 가격규제의 개선 • 사업자의 영입활동에 대한 감시 폐지 • 기타 사업자단체에 의한 규제 완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建築法施行令 改正(案) 8월중 차관회의 상정예정 • 國土利用管理法施行令 改正(案) 9월초 국무회의 상정예정 • 建築法施行令 改正(案) 8월중 차관회의 상정예정 • 建築法施行令 改正(案) 8월중 차관회의 상정예정 • 영향평가제도의 통합작업계획 시기 추진회의에 보고예정 • 國家契約法施行令 改正(案) 관계부처 협의중('97년중 개정예정) • 電氣事業法 개정준비중('98년상반기 시행예정) • 석유사업법 개정작업중('97년중 개정예정) • 電氣工事業法 改正(案) 9월중 경제장관회의 상정예정 • 畜產法 개정 준비중('98년 상반기 개정예정) • 糧穀管理法 개정준비중('98년중 개정예정) •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수행중 • 工業配置法施行令 개정·시행(7. 10) • 현재 검토중인 土地供給擴大方案에 반영하여 '98년상반기 建築法施行令 개정예정 • 農安法施行令 및 施行規則 改正(案) 법제처 심사중 • 地方稅法施行令 및 施行規則 개정작업중('97년중 개정예정) • 都市交通整備促進法施行令 개정작업중('97년중 개정예정) • 自動車管理法施行規則 改正(案) 관계부처 협의중('97년중 개정예정) • 大氣環境保全法施行令등 개정작업중('97년중 개정예정) • 熱使用機資材管理規則 改正(案) 8월중 개정예정 • 有價證券引受業務規程 개정·시행('97. 5월) • 上場法人財務管理規程 개정·시행('97. 5월) • 관련법령 개정작업중('97년하반기 및 '98년상반기중 개정예정) • 관련지침 및 정관 등 개정작업중('97년중 개정예정) • 관련운영규칙 및 규정 개정작업중('97년중 개정예정) • 관련법령등 개정작업중('97년 하반기 및 '98년 상반기중 개정예정)
<p>〈부진〉 (1개 과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도권 자연보전지역내 첨단산업 신·증설 규제 완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上水源水質改善特別措置法(案) 7월 임시국회 통과 보류(정기국회 재상정예정)

Ⅲ. 하반기 경제규제개혁 추진계획(안)

- 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 접근보다는 근원적·핵심적 과제에 대한 체계적 개혁 추진
 - 진입에서 퇴출까지 전과정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혁방안 마련
 - 경쟁촉진 및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개혁 추진
- 중소기업과 일반국민 입장에서 부담과 불편이 큰 민생관련 과제의 개혁 추진
- 각 부처가 제출한 규제전수현황 및 규제개혁계획을 심사

1. 경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개혁

가. 대상분야(11개)

- 1)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혁이 시급한 분야 (6개) : 물류·운수, 건축, 건설, 유통, 정보통신, 주류
 - 2) 복잡한 “덩어리”규제의 정비가 시급한 분야 (2개) :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절차, 환경규제의 합리화
 - 3) 경쟁라운드대비 정비가 필요한 분야(1개) : 개별법에 근거한 카르텔(59개 법률·72개 제도)
 - 4) 기타 경쟁제한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 (2개) : 전문자격서비스, 수출입관련규제
- *대상분야에 대해서는 KDI, 국토개발연구원, 산업연구원(KIET)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국책연구과제로 개혁방안 마련중

나. 대상분야별 주요검토방향

[※ 연구기관의 중간보고결과에 기초한 주요 검토항목으로서 과제별 세부내용은 앞으로 공청회,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

체화 될 예정]

(1) 건설

- 건설업역간 진입규제의 완화
- 하도급저가심사제 등 입찰·계약관련 규제의 개선
- 건설감리제도의 합리화

(2) 건축

-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건축물 관리규정의 합리화
-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외관 관련규제의 개선
- 환경친화적 공간창출 유도를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

(3)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

- 공장용지취득 및 개발관련제도 개선
- 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제도 개선
- 공장설립 및 건축관련제도 개선

(4) 물류·운수

-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진입규제 완화
- 항공 및 해운 운송부문 규제의 개선
- 물류시설관련 규제의 완화

(5) 유통

- 유통산업의 진입·영업활동 과정에서의 인허가등 절차규제 간소화
- 유통시설에 대한 입지제한관련 규제의 완화
- 기타 유통분야 영업활동제한관련 규제의 완화

(6) 정보통신

- 통신요금 규제의 합리적 개선
-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진입요건 완화

(7) 환경규제의 합리화

-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제도의 합리적 개선
- 오염방지시설업 등 환경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개선

(8) 주류

- 진입규제의 완화
- 각종 영업활동규제의 완화

(9) 개별법근거 카르텔

- 공동가격결정허용 카르텔제도의 정비
- 수급물량조정 및 공동계약체결 관련 카르텔 제도의 정비
- 자율규제관련 카르텔제도의 정비

(10) 전문자격서비스

- 전문자격서비스분야 진입요건의 합리화
- 전문자격사단체에 의한 영업활동 규제 개선

(11)수출입관련규제

- 경쟁을 제한하는 수출입제한제도 개선
- 수출입승인 등과 관련된 제반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

다. 추진일정

-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, 건축, 물류·운수, 정보통신 등 4개 분야
 - 연구기관의 용역결과 보고서 접수 : 8월말
 -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분야별로 규제개혁 시안 작성 : 9월
 - 분야별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 : 10월중
 - 과제별 규제개혁방안을 작성하여 「경제규제개혁위원회」와 「규제개혁추진회의」에 상정·확정 : 10~11월중
- 건설, 유통, 개별법근거 카르텔, 전문자격서비스 등 나머지 분야는 '98년 상반기중 「경제규제개혁위원회」와 「규제개혁추진회의」에 상정

2. 민생관련 과제의 개혁

가. 민생관련 과제의 선정기준 : 경제단체, 개별기업,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된 총 500여건의 과제 중에서 선정

- 서민과 영세민, 그리고 다수의 국민에 불편이 큰 사항
- 영세기업에 부담이 크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

나. 민생관련 과제 (5개 분야 13개 과제)

- (1) 공동주택의 시설점검·관리 관련 규제완화
 - 의무적 관리대상인 공동주택범위 완화
 -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제도 개선
 - 공동주택 신·증축시 신고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의 확대

(2) 영세사업자의 불편 및 부담경감

- 중소기업 근저당설정시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 면제
- 컴퓨터게임장관련 규제완화

(3) 일반국민의 건축물관련 불편사항 개선

- 건축물 철거 관련 절차 개선
- 건축물 용도변경관련 제출서류 작성절차 개선

(4) 부동산중개업 관련규제 개선

- 부동산중개업자의 보험가입사항에 대한 신고절차 개선
- 부동산중개업자의 인장등록절차 개선

(5) 기타 국민불편해소 관련 규제완화

- 농지취득을 위한 거주자제한 규정 개선
- 자동차의 번호판 재사용 및 폐지신고기간의 연장
- 자동차 말소등록요건 완화

다. 추진일정

- 8. 27 규제개혁추진회의시 과제명과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
- 9~11월중 과제별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·확정

3. 규제건수 조사 및 규제일몰제 작업 추진

- 19개 경제관련 부처·청에서 규제건수 현황 및 규제개혁계획 제출(총규제 건수:6,915건)

*일반행정 및 사회관련 부처·청(19개)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접수

- 각부처가 제출한 규제총수와 개혁계획의 타당성 심사

•부처별 규제갯수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규제총수를 정확히 조사

*향후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의한 규제등록제 실시에 대비

•상위법령의 근거여부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심사

•규제의 경쟁제한성이나 타당성등 실제적 내용 심사

-각 부처가 제출한 규제개혁계획중 존치 또는 완화대상(전체의 95.3%)에 대한 집중 심사

- '97 하반기에는 작업량·시간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의 근거 및 위임여부의 심사에 한정

•규제총수의 정확성 및 규제의 경쟁제한성이나 타당성등 실제적 내용에 대해서는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시행 이후 본격 심사 ■

◆경제관련 부처·청의 규제건수 현황 및 규제개혁 계획◆

	건설교통부	농림부	통상산업부	재정경제원	해양수산부	기타	총계
- 규제건수	1,350	907	877	865	861	2,055	6,915
- 개혁계획							
• 폐지	58	66	56	51	14	78	323(4.7%)
• 완화	92	34	37	39	9	63	274(3.9%)
• 존치	1,200	807	784	775	830	1,922	6,318(91.4%)